

학교법인 예운학원

2022학년도 1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9명	2명
재적임원	9명	2명
참석임원	7명	0명

1. 일 시 : 2022년 03월 28일 15:00(회의소집 통보일 : 2022년 03월 18일)

2. 장 소 : 대구시 동구 동대구로 460. 4층 회의실

3. 임원 출석현황

- 이사 (7 인) : 지홍원, 윤진영, 윤치현, 이경재, 김주현, 이재웅, 손재민

- 감사 (0 인) :

○ 불참임원

- 이사 (2 인) : 김학만, 김영철

- 감사 (2 인) : 도형집, 이언

○ 참석직원 : 예운학원 법인사무국 김재현 과장, 성운대학교 기획처 임나현 과장

4. 안 건

(1) 2022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

· 신규 전임교원 교양학부 안 외 6명, 중 7명 임용에 관한 사항

5. 회의내용

15:00정각에 법인과장이 교원현황과 관련하여 회의자료의 내용을 이사님들에게 보고한다.

의장(지홍원이사장) : 금일 이사회는 사립학교법 제17조와 학교법인 예운학원 정관 제 20조에 의거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적법하게 성립됨을 선언합니다.

간서명	이 사	김주현	이 사	윤진영	이 사	이경재
-----	--------	-----	--------	-----	--------	-----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의장(지홍원이사장) : 금일 이사회는 사립학교법 제16조와 학교법인 예운학원 정관 제 18조에 의거하여 학교법인 예운학원 산하 성운대학교의 2022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건입니다. 이 안건은 성운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정을 받아 이사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사님들께서는 준비된 회의자료를 검토하시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윤진영) : 대학은 사회가 요구하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움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인성을 교육하고, 새로움을 창조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하여, 교육의 질과 내실화, 선진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맞는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해서는 능력있는 교원의 충원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규 임용대상자는 성운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대학에 필요한 인재들을 추천하였다고 보여집니다. 회의자료를 살펴보니 신임 전임교원 교양학부 안 추천자는 유치원정교사 2급, 어린이집 원장, 심리상담사 1급, 인지행동심리상담사 1급, 놀이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난나유치원 교사 포항성모병원어린이집 교사, 해피맘어린이집 교사 등의 산업체경력 이 있습니다. 스마트평생융합학부 장 추천자는 평생교육사 1급, 학습코칭지도사 1급, 아동청소년진로상담지도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경북대학교 사범대학부속 중등교육연구소 연구원의 연구경력과 계명문화대학교, 경운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에서의 강의 경력이 있습니다. 스마트평생융합학부 정 추천자는 사회복지사 2급 평생교육사 2급, 자기주도학습코치 상담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성운대학교에서 겸임교수 강의경력이 있습니다. 미래휴먼사회복지학부 이 추천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우방센트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산업체경력과 경북전문대학교, 성운대학교에서의 강의경력이 있습니다. 미래휴먼사회복지학부 이 추천자는 2급 전문상담사, 청소년상담사, 직업상담사 2급, 청소년지도사, 다중지능상담사2

간서명	이	김주현	이	윤진영	이	이재래
-----	---	-----	---	-----	---	-----

급, 독서심리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대구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의 산업체경력과 대구한의대학교에서의 강의경력이 있습니다. 스마트평생교육학부 복지경영전공 김 추천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 동방사회복지회에서의 산업체경력이 있습니다. 스마트평생교육학부 복지경영전공 라 추천자는 학국형에니어그램 강사자격, 사회복지사 1급, 인터넷중독전문상담2급, 청소년상담사 2급, 2급 전문상담사, 평생교육사 2급, 행동치료사 2급,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봄소리심리상담센터 심리상담사의 산업체경력,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적경제연구소 연구원의 연구경력이 있습니다. 이에 신임 전임교원 총 7명 중 4명을 조교수(강의전담교수), 3명 조교수로 추천하였습니다. 더불어 추천된 신규임용자들의 임용기간을 [붙임1]과 같이 임용을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사(이경재) : 성운대학교는 지속적인 변화와 창의적 혁신을 요구되고 있는 이 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전문화된 인재 양성과 참사람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교원을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임 전임교원 7명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신규임용을 제청하였으므로 추천된 신규교원 7명의 임용안(임용기간포함)에 대한 원안에 찬성합니다.

이사(김주현) : 성운대학교의 발전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유능한 전임교원을 심의하여 제청한 신규임용안(임용기간포함)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사(이재웅) : 현재 새로운 시대는 4차 산업과 한류 등이 문화컨텐츠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교육 또한 여기에 맞게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며, 대학교육도 이에 맞는 능동적인 대처와 평생교육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직업전문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대학 본연의 의무인 교육의 질을 높이고,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사회적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성운대학교에서 추천한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안(임용기간 포함) 동의에 대하여 재청합니다.

간서명	이	김주현	이	이재웅	이	이경재
-----	---	-----	---	-----	---	-----

의장(지홍원이사장) : 2022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신규 임용건(임용기간 포함)에 대하여 찬성, 동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이사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위를 살피며 의견을 기다린다.

의장(지홍원이사장) :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이사 전원이 거수로서 찬성을 표시하다.

의장(지홍원이사장) : 참석한 이사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사립학교법 제18조 그리고 학교법인 예운학원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2022학년도 1학기 성운대학교 신입 전임교원 7명의 임용안(임용기간 포함)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금일 이사회의 폐회를 선언해도 괜찮겠습니까?

이사 전원 : 예

6. 간서명자 선출

대표 간서명자로 3인은 윤진영이사, 이경재이사, 김주현이사를 대표 간서명자로 선임하는 이재웅이사의 동의와 손재근이사의 재청으로 간서명자로 선정하다.

7.폐회선언

이상으로 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간서명	이사	김주현	이사	윤진영	이사	이경재
-----	----	-----	----	-----	----	-----

[붙임1]

2022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신규임용 명단

연번	소속학과	성명	직급	임용기간
1	교양학부	안	조교수 (비정년 강의전담)	2022.03.31.~2023.03.30.
2	스마트평생융합학부	장	조교수	2022.03.31.~2023.03.30.
3	스마트평생융합학부	정	조교수	2022.03.31.~2023.03.30.
4	미래휴먼사회복지학부	이	조교수 (비정년 강의전담)	2022.03.31.~2023.03.30.
5	미래휴먼사회복지학부	이	조교수 (비정년 강의전담)	2022.03.31.~2023.03.30.
6	스마트평생교육학부 복지경영전공	김	조교수 (비정년 강의전담)	2022.03.31.~2023.03.30.
7	스마트평생교육학부 복지경영전공	라	조교수	2022.03.31.~2023.03.30.

2022년 03월 28일

학교법인 예운학원 이사장

지홍원 (인)

이 사 윤 진 영

윤진영

이 사 윤 시 현

윤시현

이 사 이 경 재

이경재

이 사 김 주 현

김주현

이 사 이 재 웅

이재웅 (인)

이 사 손 재 근

손재근

간서명	이 사	김주현	이 사	윤진영	이 사	이경재
-----	-----	-----	-----	-----	-----	-----

학교법인 예운학원

2022학년도 1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9명	2명
재적임원	9명	2명
참석임원	7명	0명

1. 일 시 : 2022년 03월 28일 15:30(회의소집 통보일 : 2022년 03월 18일)

2. 장 소 : 대구시 동구 동대구로 460. 4층 회의실

3. 임원 출석현황

- 이사 (7 인) : 지홍원, 윤진영, 윤학만, 이경재, 김주현, 이재웅, 손재준

- 감사 (0 인) :

○ 불참임원

- 이사 (2 인) : 김학만, 김영철

- 감사 (2 인) : 도형집, 이언

○ 참석직원 : 예운학원 법인사무국 김재현 과장, 성운대학교 기획처 임나현 과장

4. 안 건

• 정관변경 안

5. 회의내용

15:30분에 법인과장이 금일 이사회의 안건에 관련하여 회의자료의 내용을 이사님들에게 보고한다.

의장(지홍원 이사장) : 금일 이사회는 사립학교법 제17조와 학교법인 예운학원 정관 제 20조에 의거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적법하게 성립됨을 선언합니다.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간서명	이사	김주현	이사	윤진영	이사	이경재
-----	----	-----	----	-----	----	-----

의장(지홍원이사장) : 이번 안건은 사립학교법 제45조 및 학교법인 예운학원 정관 제100조(정관변경)에 의거하여 학교법인 예운학원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회의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이재응) : 회의자료를 살펴보니 “제8조(임원선임의 제한)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를 “제8조(임원선임의 제한)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중 파면된 날부터 10년 경과한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 부터 6년이 경과한 자”로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 되지 못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6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개정 및 신설하고

간서명	이사	김주현	이사	윤진영	이사	이재응
-----	----	-----	----	-----	----	-----

“제9조의 2(임원의 당연퇴임 사유)학교법인의 임원이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임원”으로 본다.” 와 “제19조(이사회의 소집) ⑤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제68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②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외부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을 “제68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②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외부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며 1명은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으로 개정하고 “제76조(징계의결)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한 결과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문과 이유를 기록한 징계 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면권자 및 관할청에 통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제82조④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를 “제82조(임용) ④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한을 둘 수 있으며, 기술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제9장 청렴의무 등 제103조(청렴의무) 이사장,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간서명	이사	김주현	이사	윤진영	이사	이재민
-----	----	-----	----	-----	----	-----

제104조(사학기관 행동강령) ① 이사장,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제103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위하여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이사장은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한다.

② 제103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사학기관 행동강령은 이
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는 안입니다

이사(손재근) : 학교법인 예운학원 정관 제8조(임원선임의 제한) ②의 개정과 제9조(임
원의 결격사유) 1.2.3호의 개정과 4.5호의 신설 제9조의2(임원의 당연
퇴임 사유)과 제19조(이사회회의 소집) ⑤의 신설과 제68조(교원징계위원
구성)②의 개정과 제76조(징계의결)①항의 1호의 신설과 제82조(임용)
④의 개정과 제9장 청렴의무 등 제103조 및 제104조 신설에 관한 원안
에 찬성합니다.

이사(이경재) : 손재근이사의 찬성에 동의합니다.

이사(윤진영) : 이경재이사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의장(지홍원이사장) : 학교법인 예운학원 정관 제8조(임원선임의 제한) ②의 개정과 제9
조(임원의 결격사유) 1.2.3호의 개정과 4.5호의 신설 제9조의2(임원
의 당연 퇴임 사유)과 제19조(이사회회의 소집) ⑤의 신설과 제68조
(교원징계위원구성)②의 개정과 제76조(징계의결)①항의 1호의 신
설과 제82조(임용)④의 개정과 제9장 청렴의무 등 제103조 및 제
104조 신설에 관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동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반대하시거나 하시는 분은 말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주위를 살펴서 의견을 기다린다.)

의장(지홍원이사장) :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서명	이사	김주현	이사	윤진영	이사	이경재
-----	----	-----	----	-----	----	-----

참석이사 전원이 거수로서 찬성을 표시한다.

의장(지흥원이사장) : 예, 저를 포함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학교법인 예운학
원 정관 제8조(임원선임의 제한) ②의 개정과 제9조(임원의 결격
사유) 1.2.3호의 개정과 4.5호의 신설 제9조의2(임원의 당연 퇴임
사유)과 제19조(이사회회의 소집) ⑤의 신설과 제68조(교원징계위원
구성)②의 개정과 제76조(징계의결)①항의 1호의 신설과 제82조
(임용)④의 개정과 제9장 청렴의무 등 제103조 및 제104조 신설에
관한 원안에 관하여 이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
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금일 이사회의 폐회를 선언해도 팬
찮겠습니까?

6. 간서명자 선출

대표 간서명자로 3인은 윤진영이사, 이경재이사, 김주현이사를 대표 간서명자로 선임하
자는 이재웅이사의 동의와 손재근이사의 재청으로 간서명자로 선정하다.

7. 폐회선언

이상으로 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임원선임의 제한)		제8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생략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 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 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한자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 로부터 10년 이 경과한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중 파면된 날부터 5 년이 경과한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중 파면된 날부터 10년 경과한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		

간서명	이사	김주현	이사	윤진영	이사	이경재
-----	----	-----	----	-----	----	-----

날부터 3년이 경과한자 ③(신설)	된 날 부터 6년이 경과한자 ③ 학교법인의 임원은 본인과 「민법」 제 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이 있는 경우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법인은 이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 되지 못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신설) 5(신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6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제직하다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제9조의 2(임원의 당연퇴임 사유)학교법인의 임원이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임원”으로 본다.

간서명	이사	김주현	이사	유진영	이사	이재래
-----	----	-----	----	-----	----	-----

현행	개정안
제19조(이사회회의 소집) ①생략 ②생략 ③생략 ④생략 ⑤ 신설	제19조(이사회회의 소집) ①생략 ②생략 ③생략 ④생략 ⑤ <u>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u>
제68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②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외부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제68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②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외부위원)을 최소 <u>2명</u>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u>사람이 아니며 1명은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u>
제76조(징계의결)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한 결과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문과 이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면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76조(징계의결)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한 결과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문과 이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면권자 <u>및 관할청에</u> 통고하여야 한다.

간서명	이사	김주현	이사	윤진영	이사	이경래
-----	----	-----	----	-----	----	-----

현행	개정안
제82조(임용)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제82조(임용)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u>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한을 둘 수 있으며</u> , 기술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신설)	제9장 청렴의무 등 제103조(청렴의무) 이사장,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4조(사학기관 행동강령) ① 이사장,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제103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위하여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이사장은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한다. ② 제103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사학기관 행동강령은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2022년 03월 28일

학교법인 예운학원 이사장 지 홍 원 (인)

이 사 윤 진 영

간서명	이 사	김주현	이 사	윤진영	이 사	이계재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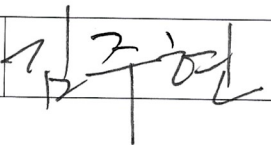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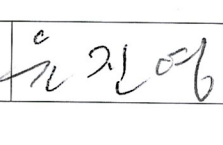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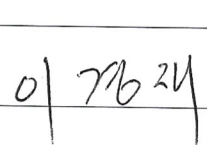
이 사 윤 지 현 

이 사 이 경 재 

이 사 김 주 현 

이 사 이 재 응 

이 사 손 재 근 

간서명	이 사		이 사		이 사	
-----	--------	---	--------	--	--------	---